

시효결손 연도별 현황

1. 건 명 : 주·정차위반과태료 시효결손
2.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3. 체납연도 : 1991년 ~ 2009년
4. 결손대상 : **4,521건**
5. 결손금액 : **금194,909,550원(금일억구천사백구십만구천오백오십원)**
6. 연도별 건수 및 금액

연도	건수	금액(원)
1991년	4	120,000
1992년	8	240,000
1993년	28	840,000
1994년	33	990,000
1995년	12	440,000
1996년	19	760,000
1997년	61	2,480,000
1998년	75	3,010,000
1999년	68	2,730,000
2000년	173	7,020,000
2001년	225	9,056,410
2002년	258	10,480,000
2003년	333	13,500,000
2004년	159	6,423,190
2005년	210	8,560,000
2006년	755	30,780,000
2007년	1,617	65,680,000
2008년	100	5,337,300
2009년	383	26,462,650
합계	4,521	194,909,550